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80호 2008. 10. 15 (수)

【조 례】

- 정선군조례 제2135호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정선군조례 제2136호 정선군읍면사무소소재지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정선군조례 제2137호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정선군조례 제2138호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 5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08-577호 2008.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2
- 정선군공고 제2008-578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4
- 정선군공고 제2008-579호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5
- 정선군공고 제2008-580호 취득세 9월 수시분 공시송달..... 26
- 정선군공고 제2008-583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공고..... 29
- 정선군공고 제2008-589호 취득세·등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독촉고지서..... 3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10. 14.

정선군조례 제2135호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노인성질환(치매 및 중증환자 제외)”을 “노인성질환”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65세이상의 자로서 노인성질환(치매 및 중증환자 제외)”을 “65세이상 또는 65세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한 자의 배우자”로 한다.

1. 65세이상의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또는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시설급여 수급대상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급여비용 등의 수납 등) 요양원 입소자의 시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청구·수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입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정선군노인요양원에 입소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입소한 것으로 본다.

개 정 이 유

- 2008. 7. 1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정선군노인요양원을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치매 및 중증환자가 요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에 따라 치매 및 중증환자에 대한 요양 및 편의제공을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으로 함(제4조)
- 65세 이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만 입소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시설입소 대상자도 입소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시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청구, 수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도록 함(제7조)
- 입소자중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한 경우 퇴소시킬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입소한 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더라도 계속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읍면사무소소재지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10. 14.

정선군조례 제2136호

정선군읍면사무소소재지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읍면사무소소재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읍면사무소소재지조례”를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로 한다.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표 중 고한읍사무소의 소재지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5-4번지”를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80-4번지”로 하고, 사북읍사무소의 소재지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48번지”를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26번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읍·면사무소 청사이전 및 소재지 지번합병 등과 관련하여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고한읍사무소 소재지를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5-4번지”에서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80-4번지”로 변경
- 사북읍사무소 소재지를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48번지”를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26번지”로 변경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10. 14.

정선군조례 제2137호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주거용으로”로 한다.

제33조 본문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100분의 70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본문중 “1981년4월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를 “1989년1월24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본 호의 2,000제곱미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 공포(2008.4.18) 및 시행 (2008.5.18) 됨에 따라,
- 동법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 개정(안)에 의거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일부 삭제(제4조)
-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부료 기준 완화(제27조)
-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감액율) 확대(제33조)
-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확대(제39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10. 14.

정선군조례 제2138호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100m이내로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 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정선군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신고를 한 경우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

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標識)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채수장소는 사용장소에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

④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의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시행)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선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에게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군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오수량산정예는 별표4와 같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 m³/일 이상인 경우 10m³/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m³/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m³/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m³/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 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 ②제22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m³/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정선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3. 군수는 법 제61조제3항에 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는 별표 5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별표 7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 ④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한다.

제23조(분뇨의 수집·운반 청소대행) ①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 업자에게 분뇨의 수집·운반 등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분뇨 수집·운반 대행 업자는 법, 영, 규칙과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

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군수는 분뇨처리시설 사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분뇨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감면 등) 군수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원인자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이의신청)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15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효율표(제15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기본요금 (원)	사 용 요 율			
		사용구분(㎡/월)	㎡당 단가 (원)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하수관거사용지역
가 정 용	476	1 ~ 10		128	
		11 ~ 20		141	
		21 ~ 30		155	
		31 ~ 40		170	
		41 ~ 50		187	
		51 이상		205	
업 무 용	1,192	1 ~ 20		162	
		21 ~ 50		178	
		51 ~ 100		196	
		101 ~ 300		215	
		301 이상		237	
영 업 용	2,489	1 ~ 30		211	
		31 ~ 50		232	
		51 ~ 100		255	
		101 이상		280	
욕탕1종	19,444	1 ~ 200		293	
		211 ~ 300		322	
		301 ~ 500		354	
		501 이상		390	
욕탕2종	60,929	1 ~ 200		434	
		201 ~ 300		477	
		301 ~ 500		525	
		501 이상		577	
기타(산업용)	㎡당			200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효율이 높은 업종의 효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3. m³당 단가 구분

가. 분류식 지역 : 오수·우수관거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오수가 우수관거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나. 합류식 지역 : 합류관거를 통하여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

다. 하수관거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m³/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9조제1항)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시 또는 군별로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text{만원}) \times (6/100) \times (183/365) = 3(\text{만원})$$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오수량 : m³/일)

구 분	최초 행정 행위시 오 수 발생량 (A)	1차 증축·용도변경				2차 증축·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 의 증축 및 용도 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6	9	-	미부과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로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 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로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원인자부담 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 생량은 0으로 봄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 주)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bigcirc \text{ m}^3\text{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alph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6]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4조제1항)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 수 료		
	수 집 · 운 반	처 리	계
1리터	12원	2원	14원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리터	13원	2원	15원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별표 7]

톤당 원인자부담금 요율표

(단위 : 원)

시설용량 (㎡)	오수처리시설		②단독정화조	하수처리시설비용 (처리장+관거)	부과금액 (①-②)
	FRP시중가	①FRP조달가(적용)			
1	7,086,143	2,317,098	1,137,563	7,080,086	1,179,535
2	14,172,286	4,017,028	1,380,170	14,160,172	2,636,858
3	16,534,333	5,716,959	1,515,827	21,240,258	4,201,132
4	18,896,381	7,416,890	1,709,440	28,320,344	5,707,450
5	21,258,429	9,116,821	1,927,226	35,400,430	7,189,595
6	28,344,572	11,433,919	2,264,012	42,480,516	9,169,907
7	31,887,643	12,558,525	2,619,983	49,560,602	9,938,542
8	35,430,715	13,683,132	2,975,955	56,640,688	10,707,177
9	38,973,786	14,341,440	3,318,785	63,720,774	11,022,655
10	42,516,858	14,999,748	3,661,616	70,800,860	11,338,132
11	46,059,929	16,066,118	3,897,951	77,880,946	12,168,167
12	49,603,001	17,132,489	4,134,286	84,961,032	12,998,203
13	53,146,072	18,369,944	4,693,509	92,041,118	13,676,435
14	56,689,144	19,607,399	5,252,733	99,121,204	14,354,666
15	60,232,215	20,129,897	5,579,833	106,201,290	14,550,064
16	63,775,287	20,652,395	5,906,934	113,281,376	14,745,461
17	66,137,334	21,819,495	6,233,744	120,361,462	15,585,751
18	67,318,358	22,986,595	6,560,554	127,441,548	16,426,041
19	69,089,894	24,153,695	7,023,943	134,521,634	17,129,752
20	70,861,430	25,320,796	7,487,332	141,601,720	17,833,464
25	74,404,501	29,762,531	8,504,110	177,002,150	21,258,421
30	77,947,573	34,204,266	9,520,888	212,402,580	24,683,378
35	81,490,644	37,912,914	11,003,727	247,803,010	26,909,187
40	85,033,716	41,621,563	12,486,566	283,203,440	29,134,997
45	88,576,787	43,567,769	14,017,074	318,603,870	29,550,695
50	92,119,859	45,513,976	15,547,583	354,004,300	29,966,393
55	95,662,930	47,347,117	17,032,904	389,404,730	30,314,213
60	99,206,002	49,180,258	18,518,226	424,805,160	30,662,032
65	100,977,537	51,702,499	20,295,216	460,205,590	31,407,283
70	101,863,306	54,224,741	22,072,206	495,606,020	32,152,535
75	104,520,609	56,746,983	23,849,196	531,006,450	32,897,787
80	106,292,145	59,269,225	25,626,187	566,406,880	33,643,038
85	108,063,680	62,617,351	27,845,396	601,807,310	34,771,955
90	108,949,449	65,965,477	30,064,606	637,207,740	35,900,871
95	111,606,752	69,313,603	32,283,816	672,608,170	37,029,787
100	113,378,288	72,661,730	34,503,026	708,008,600	38,158,704
110	117,629,973	78,091,280	38,294,114	778,809,460	39,797,166
120	121,881,659	83,520,831	42,085,203	849,610,320	41,435,628
130	126,133,345	88,950,382	45,876,291	920,411,180	43,074,091
140	130,385,031	94,379,933	49,667,380	991,212,040	44,712,553
150	134,636,717	99,809,484	53,458,469	1,062,012,900	46,351,015
160	138,888,402	105,239,034	57,249,557	1,132,813,760	47,989,477
170	143,140,088	110,668,585	61,040,646	1,203,614,620	49,627,939
180	147,391,774	116,098,136	64,831,734	1,274,415,480	51,266,402
190	151,643,460	121,527,687	68,622,823	1,345,216,340	52,904,864
200	155,895,146	126,957,238	72,413,912	1,416,017,200	54,543,326

※ 합류식지역은 ①오수처리시설 비용에서 ②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이 면제됨.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³/일		※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검사일자 (. .)	보완 사항	2차 검사 검사일자 (. .)	비고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 도면)							

개 정 이 유

-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로 이원화 되어있던 하수(下水)와 오수(汚水)·분뇨의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하수도 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신고에 관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제3조)
-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용도제한에 등에 관한 사용을 규정함(제7조 내지 제10조).
- 배수설비공사의 시행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내지 제14조)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납기 징수방법등 규정(제15조 내지 제16조)
- 하수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7조)
-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시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9조)
-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10m³/일을 초과하는 양으로 산정토록 함.(제20조).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 전체를 부과·징수토록 규정함(제22조).
- 분뇨의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하수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가 청소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4조,
-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
- 종전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

정선군공고 제2008-577호

2008.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 6.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8. 9. 29.

정 선 군 수

1. 200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가격기준일 : 2008. 6. 1.

나. 결정·공시대상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62번지 외 154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가격(토지,건물 일체)

2. 이의신청

가. 접수기간 : 2008. 10. 1 ~ 10. 30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비치)

마. 이의신청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정선군공고 제2008-578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사전에 관계되는 지역의 주민 여러분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6.

정 선 군 수

1. 예 고 명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2. 행정예고취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3. 설치장소

읍 면 별	설 치 위 치	지 번	비 고
고한읍	고한읍 고한12리(성심병원 옆)	고한리 121-1번지선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쓰레기 감시카메라 설치장소 인근 주민은 2008년 10월 25일까지 정선군수(환경산림과 생활환경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267 환경산림과 생활환경팀

- 전화번호 : 033-560-2336(Fax 560-2589)

- E-mail : doyouck@js.go.kr

- 제출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정선군공고 제2008-5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하여 재산압류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 10. 6.

정 선 군 수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08.10.07~ 2008.10.20(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징수부서(033-560-2292)로 연락바라며,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법인)	주 소	체납세목	체납액(원)	압류 물건	송달불능 사 유
김예순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1-58 (7통4반)	재산세(토지)외 1건	9,742,840	부동산	수취인불명
코랜 리얼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5-15 장원빌딩 502호	취득세(부동산) 외 2건	1,945,520	부동산	수취인불명
김상규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360-15 (5/2)	자동차세	129,760	부동산	수취인부재

정선군공고 제2008-580호

공 시 송 달

1. 성 명 : 전제길 외 37명(“별첨”)
2. 주소또는거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09-6 (3/1)
3. 서류의 명칭 : 취득세 납세고지서
4. 서류의 내용 : 취득세 납세고지서(2008년 9월)

위의 서류를 2008년 9월에 귀하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사무소가 불분명하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 고지가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변경된 납기인 2008년 10월31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8일

정 선 군 수

취득세 9월 수시분 공시송달 내역

개인(법인)명	과세물건	취득세액	공고사유
전제길	건물 정선읍 봉양리 209-8번지 건물 99.72㎡ 신규(축)	1,020,12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조형구	건물 고한읍 고한리 84번지 건물 79.04㎡ 신규(축)	379,070	이사감 고지서 반송
김대성	건물 사북읍 사북리 369-4번지 건물 2.71㎡ 신규(축)	24,490	이사감 고지서 반송
유일종합건설	건물 사북읍 사북리 155-3번지 건물 198.72㎡ 신규(축)	528,99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민경자	토지 정선읍 덕우리 293번지 993.0000㎡ 지목변경	43,690	이사감 고지서 반송
정광수	정선읍 용탄리 517-9번지 지목변경	140,750	이사감 고지서 반송
최재식	정선읍 덕송리 572-3번지 지목변경	32,080	이사감 고지서 반송
최원녀	토지 정선읍 회동리 127-4번지 124.0000㎡ 상속	13,42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이한서	토지 정선읍 용탄리 71-4번지 8192.0000㎡ 매매	4,889,36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김영화	토지+건물 고한읍 고한리 62-245번지 33.0000㎡ 건물 59.18㎡ 상속	861,83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박용화	토지 신동읍 예미리 608번지 671.0000㎡ 상속	15,93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최세원	토지 신동읍 조동리 산 63-45번지 7125.0000㎡ 매매	1,330,290	이사감 고지서 반송
민병오	토지 동면 백전리 373번지 717.0000㎡ 지목변경	25,08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이영희	동면 건천리 438번지 지목변경 지목변경	84,62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이영희	동면 호촌리 61번지 지목변경	284,49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이영희	동면 호촌리 61-1번지 지목변경	126,66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이영희	동면 호촌리 61-1번지 지목변경	126,66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전주경	토지 동면 석곡리 728번지외 3필지 5652.0000㎡ 상속	601,900	이사감 고지서 반송
김두형	토지 동면 물운리 74번지외 3필지 4926.0000㎡ 상속	312,98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고지애	토지 동면 물운리 542번지외 2필지 6297.0000㎡ 상속	453,40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진은숙	토지 동면 북동리 산 107번지 29157.0000㎡ 매매	1,908,45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이기화	남면 우릉리 279번지 지목변경	53,82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라혜주	토지 남면 무릉리 514-3번지 1021.0000㎡ 상속	289,75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고재동	토지 남면 유평리 172번지와 5필지 13619.0000㎡ 상속	929,73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계원근	토지 남면 문곡리 246-4번지 2603.0000㎡ 매매	558,74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김종두	토지 남면 무릉리 592-1번지 1949.0000㎡ 매매	6,535,36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김종두	토지 남면 무릉리 590-6번지와 1필지 1734.0000㎡ 매매	6,976,97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최인자	북면 여량리 256-1번지 지목변경	167,22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박정환	북평면 숙암리 454번지와 6필지 매매	15,280,00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박종대	토지 북평면 남평리 189번지와 7필지 9537.0000㎡ 상속	1,495,25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주성근	토지 북평면 장열리 125-1번지와 2필지 8442.0000㎡ 상속	1,790,60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박남순	토지 임계면 고양리 320번지 509.0000㎡ 지목변경	17,23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정연순	토지 임계면 송계리 738-14번지와 15필지 302502.0000㎡ 상속	1,332,85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박종선	토지 임계면 임계리 211-2번지와 9필지 8221.0000㎡ 상속	1,270,43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김계순	토지 임계면 낙천리 1046-5번지와 3필지 7209.6000㎡ 상속	1,035,04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김동수	토지 임계면 고양리 53번지와 2필지 23214.0000㎡ 상속	954,96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정선군공고 제2008-583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공고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최 윤 규	주 소	정선군 남면 광덕리 30-1번지
소 하 천 명		채운천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남면 광덕리 1181천(30-1(대), 79(전)번지선)		
	면 적	A = 372m ² (주택:239m ² , 농경지:133m ²)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8년 10월 08일 ~ 2012년 12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주택 및 농경지 사용		

정선군공고 제2008-589호

공 시 송 달

성 명 : 나무와나무 등 273명 (내역별첨)

주소또는거소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313-5 등 273개소

서류의 명칭 : 취득세·등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독촉고지서

서류의 내용 : 2008년 9월 발송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위의 서류를 2008년 9월중 귀하에게 우편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사무소 등이 불분명하므로 독촉납기를 2008년 11월 7일로 변경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정 선 군 수

2008년 9월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내역서

세목	납세자명	과세물건	세액합계	공고사유
취득세	나무와나무	건물 사북읍 사북리 219-32번지 가동 건물 147.72㎡ 신규(축)	3,258,220	수취인미거주
취득세	나무와나무	건물 사북읍 사북리 219-34번지 가동 건물 147.72㎡ 신규(축)	3,258,220	수취인미거주
취득세	이서영	토지 사북읍 사북리 97-16번지외 1필지 600.0000㎡ 매매	490,160	수취인미거주
취득세	유영향	토지 신동읍 운치리 639번지 9329.0000㎡ 매매	633,850	수취인미거주
취득세	윤복순	토지 동면 화암리 1089-2번지 1960.0000㎡ 매매	869,430	폐문부재
취득세	문춘상	토지 동면 호촌리 254번지 15960.0000㎡ 매매	1,309,570	수취인미거주
취득세	신동익	토지 동면 북동리 199번지외 2필지 18020.0000㎡ 매매	7,001,890	수취인미거주
취득세	장영이	토지 동면 호촌리 107번지 2083.0000㎡ 매매	1,633,760	수취인미거주
취득세	이길복	토지 임계면 도전리 40번지외 2필지 5901.0000㎡ 매매	489,850	수취인미거주
취득세	정호중	901319 2008년식 승합 유니버스 신규(축)	2,208,890	이사감
취득세	함옥순	25모6501 1999년식 승용 매매	79,600	이사감
등록세	함옥순	25모6501 1999년식 승용 이전등록(일반승용)	199,02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은하건설	기계설비공사업	6,180	수취인불명
면허세	새터건설	고한리36번지외7필지(고한중앙아파트철거공사)	3,09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새터건설	고한리36번지외7필지(고한중앙아파트철거공사)	3,09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양영자	나전리193-11번지	6,18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남순희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남순희)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조상철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상철)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이순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순자)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조병옥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병옥)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용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용문)	5,660	수취인불명
주민세	홍옥순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홍옥순)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사유리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사유리나)	5,660	주소불명
주민세	이명숙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명숙)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권영목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권영목)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홍윤경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홍윤경)	5,660	이사감
주민세	김효선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효선)	5,660	이사감
주민세	윤영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영수)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선일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선일)	5,660	이사감
주민세	신춘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신춘자)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이명심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명심)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정선경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선경)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유승기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승기)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진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진수)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한창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한창수)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재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재인)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달영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달영)	5,660	수취인불명
주민세	김형관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형관)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권윤숙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권윤숙)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우흥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우흥수)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정신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신교)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최영현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영현)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이명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명자)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유종명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종명)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전광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광수)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정운봉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운봉)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배경식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배경식)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안동찬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안동찬)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여규광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여규광)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조은경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은경)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송인갑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송인갑)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성부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성부)	5,660	이사감
주민세	전제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제원)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신원목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신원목)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수창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수창)	5,660	이사감
주민세	이용관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용관)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수복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수복)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허정대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허정대)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교목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교목)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이지훈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지훈)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영주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영주)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윤명득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명득)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백금주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백금주)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안혜영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안혜영)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문용배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문용배)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홍수남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홍수남)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전주경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주경)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권종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권종호)	5,660	수취인불명
주민세	정희진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희진)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순녀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순녀)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차영선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차영선)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윤종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종호)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홍선옥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홍선옥)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종석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종석)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오초근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오초근)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영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영수)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장세연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세연)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이창우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창우)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윤용재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용재)	5,660	수취인불명
주민세	장윤정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윤정)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영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영수)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이영희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영희)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한종흠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한종흠)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전용준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용준)	5,660	이사감
주민세	김진혁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진혁)	5,660	이사감
주민세	박성구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성구)	5,660	이사감
주민세	나충근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나충근)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이광일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광일)	5,660	이사감
주민세	최영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영호)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미순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미순)	5,660	이사감
주민세	유종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종호)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홍현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홍현수)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백성철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백성철)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유재용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재용)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고용재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고용재)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심순덕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심순덕)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숙량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숙량)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조성팔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성팔)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찬희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찬희)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권경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권경호)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숙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숙자)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이건실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건실)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조진선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진선)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청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청하)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희균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희균)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준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준호)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정옥이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옥이)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최영민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영민)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최영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영길)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홍상식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홍상식)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전호성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호성)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시은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시은)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고원진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고원진)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이진규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진규)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종녀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종녀)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성녀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성녀)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영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영자)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배영식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배영식)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주영일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주영일)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정찬구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찬구)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허상욱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허상욱)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기홍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기홍)	5,660	이사감
주민세	허지선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허지선)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전성만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성만)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이혁진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혁진)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정춘희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춘희)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진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진환)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최상기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상기)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정숙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정숙)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이성규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성규)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고재홍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고재홍)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유덕주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덕주)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미영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미영)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장병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병문)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정해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해길)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선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선자)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허기주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허기주)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재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재수)	5,660	이사감
주민세	박병연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병연)	5,660	이사감
주민세	김옥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옥자)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원기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원기)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신수남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신수남)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형중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형중)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최은석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은석)	5,660	이사감
주민세	하태옥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하태옥)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노지향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노지향)	5,660	이사감
주민세	김유라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유라)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윤요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요호)	5,660	이사감
주민세	임영식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임영식)	5,660	이사감
주민세	김병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병원)	5,660	이사감
주민세	조현덕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현덕)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영구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강영구)	5,660	이사감
주민세	김종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종원)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홍배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홍배)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이화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화춘)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윤금옥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금옥)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황영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황영호)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사만진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사만진)	5,660	이사감
주민세	김영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영자)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최동현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동현)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성준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성준)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장금녀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금녀)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지영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지영길)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장영민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영민)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고동현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고동현)	5,660	이사감

주민세	남진영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남진영)	5,660	이사감
주민세	정주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주교)	5,660	수취인불명
주민세	정남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남교)	5,660	수취인불명
주민세	김태경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태경)	5,660	수취인불명
주민세	석병기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석병기)	5,660	수취인불명
주민세	김태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태하)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종대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종대)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정일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정일)	5,660	수취인불명
주민세	전복석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복석)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장영애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영애)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세영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세영)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석병기	2008년 개인사업장할 (동강)	56,650	수취인불명
주민세	송인갑	2008년 개인사업장할 (서울물산)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이형석	2008년 개인사업장할 (신사동간장게장아구찜전문점)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나충근	2008년 개인사업장할 (홍재수식육점)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송광순	2008년 개인사업장할 (홍재수갈비)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대한국토설계 기술공단	2008년 법인균등할 (자) 대한국토설계기술공단)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해림	2008년 법인균등할 (봉양3, 4리)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아라리페인트	2008년 법인균등할 (아라리페인트 합자회사)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남부생약농업 협동조합	2008년 법인균등할 (강원남부생약농업협동조합)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은하건설	2008년 법인균등할 (주식회사 은하건설)	56,650	수취인불명
주민세	(주)션인터내셔널	2008년 법인균등할 ((주)션인터내셔널)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화이트스포츠	2008년 법인균등할 (화이트스포츠)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신풍	2008년 법인균등할 (신풍)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신영건설	2008년 법인균등할 (중산기업)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새터건설	2008년 법인균등할 (고한리36번지외7필지)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에이치유종합운송	2008년 법인균등할 (일진기업주식회사)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제월	2008년 법인균등할 (범우)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정선고원관광레저	2008년 법인균등할 (정선고원관광레저개발주인())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기광건설	2008년 법인균등할 (기광건설 (주))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우드램	2008년 법인균등할 ((주) 우드램)	56,650	수취인불명
주민세	민주	2008년 법인균등할 (민주주식회사)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광일토건	2008년 법인균등할 ((자) 광일토건)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남면개발주인(주)	2008년 법인균등할 (남면개발주인 (주))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주식회사 강원하이테크	2008년 법인균등할 (주식회사강원하이테크)	56,650	이사감
주민세	전금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정선읍 용탄리905-1번지	92,52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서림주택	정선읍 북설리 628 아리랑아파트 1동 100호	138,0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남부생약농업 협동조합	정선읍 덕송리 476-3	9,99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남부생약농업 협동조합	정선읍 덕송리 476-7	4,51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전필화	정선읍 애산리 432-85	7,2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박순덕	고한읍 고한리 16-31	1,424,79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윤용재	고한읍 고한리 62-258	10,7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신영농조합법인	사북읍 사북리 32	14,91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이연미	사북읍 사북리 300-3 108동 302호	124,620	이사감
재산세	최병도	사북읍 사북리 344-97	39,74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김용성	사북읍 사북리 317-31	3,390,77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홍기용	신동읍 예미리 668-6	577,45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이형봉	신동읍 조동리 209-12	6,27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일관광여행사	북면 유천리 435-5	20,14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대영영농조합	임계면 임계리 394-3	30,380	이사감
재산세	김계순	임계면 송계리 728	9,47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전미라	임계면 봉산리 140	7,13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김영자	임계면 낙천리 672-1	62,860	이사감
재산세	함수복	임계면 용산리 221-1	7,13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권금옥	정선읍 봉양리 36-19[연납]	14,27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신춘자	정선읍 봉양리 134-12[연납]	42,32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김명숙	정선읍 봉양리 161-6 리버빌 1동 401호[연납]	112,24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황중현	정선읍 북설리 628 아리랑아파트 3동 203호[연납]	25,72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손창덕	정선읍 북설리 746-6 미소빌 1동 409호[연납]	55,05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송재영	정선읍 북설리 772-2 103동 205호[연납]	23,58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전봉태	정선읍 북설리 772-2 105동 406호[연납]	23,58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정광수	정선읍 용탄리 517-9[연납]	23,2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정운봉	정선읍 애산리 415-78[연납][토지]	11,43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권중찬	고한읍 고한리 6-1[연납]	43,5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민병재	고한읍 고한리 127-35[연납]	14,27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안준집	고한읍 고한리 137-6[연납]	16,1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권명숙	고한읍 고한리 274-22[연납]	55,9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정희진	고한읍 고한리 산 213-10[1기분]	75,20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유은혜	고한읍 고한리 산 261-34 1동 402호[연납]	28,78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박순덕	고한읍 고한리 16-31[1기분]	44,54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이보옥	고한읍 고한리 산 261-15 2동 308호[연납]	32,73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이종규	고한읍 고한리 62-55[연납][토지]	9,7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최병도	사북읍 사북리 344-97[연납]	75,05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이기관	사북읍 사북리 389-24[연납]	22,01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송봉순	사북읍 사북리 435-1 1동 203호[연납]	14,4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정옥이	사북읍 사북리 435-1 1동 504호[연납]	20,14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전승우	사북읍 사북리 435-5 205동 407호[연납]	15,52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권순옥	사북읍 사북리 435-5 205동 507호[연납]	14,99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김아현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아파트 2동 110호[연납]	17,81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정옥이	사북읍 사북리 294-3 202동 704호[연납]	91,99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정의철	사북읍 사북리 302 101동 1210호[연납]	43,79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김영일	사북읍 사북리 302 101동 302호[연납]	54,180	이사감
재산세	최승호	사북읍 사북리 302 101동 401호[연납]	69,78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박찬희	사북읍 사북리 302 102동 1106호[연납]	32,85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김경애	사북읍 사북리 302 103동 905호[연납]	16,71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박은숙	사북읍 사북리 302 104동 204호[연납]	42,37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박찬희	사북읍 사북리 302 104동 804호[연납]	32,85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이승윤	사북읍 사북리 344-74[연납]	18,82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박순녀	사북읍 사북리 317-214[연납][토지]	48,70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이승윤	사북읍 사북리 344-74[연납][토지]	24,39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최돈식	신동읍 예미리 692-15[연납]	12,05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이형봉	신동읍 조동리 209-12[연납]	17,03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이종우	신동읍 방제리 443-54[연납]	25,810	이사감

재산세	정의현	신동읍 조동리 213-6[연납]	19,25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홍기용	신동읍 예미리 668-6[연납][토지]	28,34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박금년	동면 화암리 423-7[연납]	6,83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박성수	남면 무릉리 530 무릉아파트 101동 103호[연납]	28,4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정광영	남면 무릉리 530 무릉아파트 103동 502호[연납]	28,4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이우비	남면 무릉리 530 무릉아파트 105동 208호[연납]	28,4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김영일	남면 무릉리 590-1 4동 108호[연납]	23,1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이장열	임계면 봉산리 424[연납]	15,85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김영자	임계면 낙천리 672[연납]	26,14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김종호	21라7378(비영업용,배기량:1991,승차정원:7) [경감율:15%]	23,0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이재록	강원27너8576(비영업용,배기량:1468)[경감율:50%]	8,97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이영희	강원28마8777(비영업용,배기량:1498)[경감율:50%]	6,84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김진환	강원28노3763(비영업용,배기량:1795)[경감율:20%]	21,12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주식회사 다성건설	강원28더1657(비영업용,배기량:1836)[경감율:35%]	18,43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사만용	51노4431(비영업용,배기량:1596)[경감율:50%]	6,080	수취인미거주